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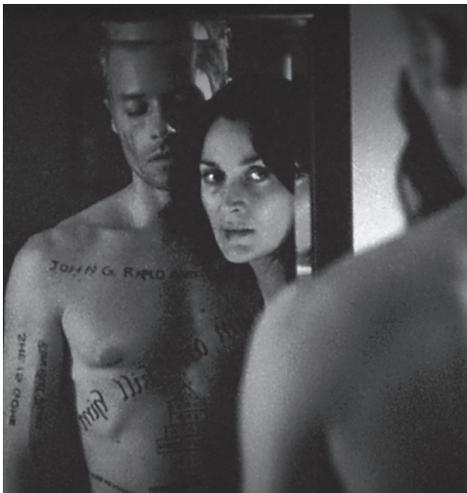
## 있을 법한 이야기

### 영화 『메멘토(memento)』로 알아보는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의 범죄

#### 영화 줄거리

주인공 레너드, 전직 보험 수사관이었다. 그는 기억이 10분 밖에 지속되지 않는 단기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.

자신의 아내가 강간당하고 살해되던 날의 충격으로 그 날 이후의 새로운 기억들이 없어진 것이다. 그는 자신의 몸의 문신과 폴라로이드 사진들로 매 10분마다 기억을 더듬으며 범인들을 쫓는다. 그 과정에서 자신 혹은 타인의 의지로 범죄들을 저지르게 된다.



#### 여기서 잠깐

자신의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?



기억이 10분 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면 범행 당시의 범행의사를 입증하지 어려운 일입니다.



게다가 범행의사가 조작되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마큼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곤란해 집니다.

이 때 형법에서는 ‘책임능력’을 따져보게 됩니다.

책임능력이란, 형법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정신능력을 말합니다.



대개는 판단능력, 의사능력을 기초로 하며 형사책임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합니다.

## 형 법

### ·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

#### · 형법 제9조(형사미성년자)

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.

#### · 형법 제10조(심신장애인)

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.

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.



③ 위협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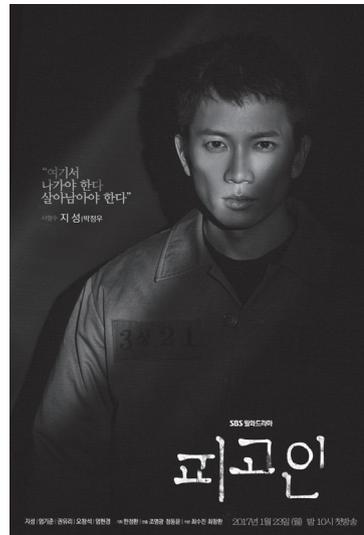
그렇다면 레너드는…?

레너드의 경우는  
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텐데요

과연 무죄를 받게 될까요?

현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범인의 자백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선고하게 됩니다.

따라서 기억상실증 환자도 범행사실이 밝혀진다면 유죄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. 단, 범행시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형은 신중히 판단될 것입니다.



드라마 <피고인>에서 박정우가 기억상실증 증상이 나타났지만 살인죄가 인정된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.

(출처/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)